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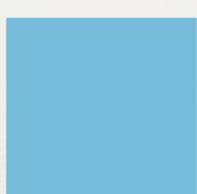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70550-000092-01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



CITES와 한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 간 등 록 번 호
11-1470550-000092-01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



CITES와 한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 간 사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보호단계로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 CITES협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향, 옹담 등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을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1993년 본 협약에 가입하여 약용 동·식물은 우리청이, 그 외의 품목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한약재의 수출·입 및 유통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CITES 규정의 복잡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해하여 CITES 규정을 준수하고, 멸종되어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원이 보존·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일 러 두 기

1. 본 책자는 2007년 출간된 이후 부속서 및 관련법규 등 지금까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품목들에 대한 사진을 수정하여 추가 게재하였다.
2. 제1장은 CITES협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법규 및 절차를, 제3장에서는 약용으로 사용하는 CITES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다.
3. 제3장에 수록된 품목들의 기원은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 공정서에 수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분포지역 등의 정보는 CITES 홈페이지(www.cites.org) CITES species database 정보를 참조하여 수록하였다.
4. 57페이지에 수록된 산자고에 대한 식물사진은 백초당 한약방 신전휘 원장께서 제공한 것을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Chapter I CITES 협약 7

CITES란?	9
조직과 관련기구	10
CITES 협약과 부속서	12
CITES 해당종의 거래	14
회원국 가입현황	18

Chapter II 한국의 CITES 19

우리나라의 CITES 관련 법규와 당국	21
CITES 허가서 및 증명서	23
국내 이행법 체계 - 의약품 이외의 야생 동·식물	24
국내 이행법 체계 - 약용 동·식물	35
CITES 해당 한약재의 수출·입 요령	37
문의처	40

Chapter III CITES 해당 한약재 41

CITES 해당 한약재	43
부속서 I 수재종 - 국제 거래 금지	45
1) 서각(犀角, Rhinoceros Horn)	45
2) 호골(虎骨, Tiger Bone)	47
부속서 I 수재종 - 재배품 거래 가능	48
3) 목향(木香, costus Root)	48
부속서 I, II 수재종 - 분포지역에 따라 일부 거래	49
4) 웅담(熊膽, Brown bear gall bladder)	49
5) 사향(麝香, Musk)	51

부속서Ⅱ 수재종 - 수출입시 승인 필요	53
6) 구척(狗脊)	53
7) 노회(蘆薈, Aloe)	54
8) 백급(白芨)	55
9) 사담(蛇膽)	56
10) 산자고(山慈姑)	57
11) 석곡(石斛)	58
12) 어교(魚膠)	59
13) 영양각(羚羊角)	60
14) 육종용(肉苁蓉)	62
15) 인도사목(印度蛇木)	63
16) 인삼(人蔘, 홍삼(紅蔘), 미삼(尾蔘))	64
17) 자단향(紫檀香)	65
18) 적전(赤箭, 천마(天麻))	66
19) 천산갑(穿山甲, Chinese Pangolin)	68
20) 침향(沈香)	70
21) 파클리탁셀(paclitaxel)	72
22) 호황련(胡黃蓮)	74
부속서Ⅱ 수재종 - 우리나라는 유보	75
23) 해마(海馬)	75
부속서Ⅲ 수재종	76
24) 귀판(龜板)	76

Chapter I

CITES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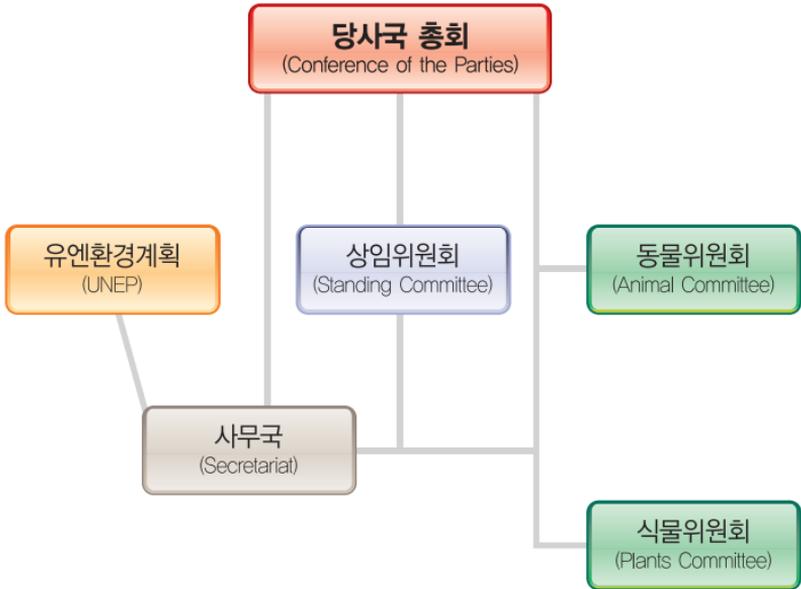




CITES란?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1973.3.3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7.1부터 발효되었으며, 워싱턴 조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 CITES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야생 동·식물종 거래를 법적 구속력과 연계시킨 국제 협약으로 2010년 5월 현재 17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 CITES는 각 나라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국 사이에 부속서 수재종의 국제거래가 있을 경우 협약의 규정에 따라 거래하도록 하여,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과도한 포획과 거래를 방지하고 전체 거래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CITES 협약 및 부속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 나라마다 국내법에서 정하는 규제의 강도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 CITES는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종에 대한 국제 거래만을 다루며, 국내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ITES는 살아있는 동·식물 뿐 아니라 식품, 동물의 가죽, 원목, 약기, 건조된 약재 등을 포함한다.

조직과 관련기구



● 당사국총회

- 2년마다 개최되며, 전체 회원국이 모여 투표에 의해 협약 및 부속서를 개정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과 결의문을 채택한다.

● 상임위원회

- 6개주(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표로 구성되며, 협약의 이행, 사무국 예산 관리 및 당사국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동물위원회 · 식물위원회

-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6개주 대표와 교체대표로 구성되며,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에서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 CITES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동·식물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일차적 임무이며, 부속서 수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해당종의 정기적 검토, 특정 종의 거래가 문제된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조언 등의 역할을 한다.

● 사무국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 계획)에 의해 설립된 CITES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그 역할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교육훈련세미나 구성, 협약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연구, 연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 및 각 위원회의 개최 준비, 협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TRAFFIC, UNEP-WCMC, IUCN

- CITES 각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단체로서, CITES 해당 동·식물종의 생태 및 국제거래에 대한 과학적 자료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ITES 협약과 부속서

● 협약의 내용

- 본문(전문 및 25개조)과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포함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제3,4,5조)
-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조치해야 할 사항(제8,9조)
 - 협약규정의 이행 및 협약내용에 위반된 거래의 방지조치 이행
 - 부속서상의 야생 동·식물종의 거래에 대한 기록유지 및 동 기록의 사무국 제출
 - 야생 동·식물 교역에 따른 수출·입 승인서 발급
 -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지정
 - ※ 협약 및 부속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 제정 필요
- 비당사국의 소관 관청에서 협약상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문서를 발부할 경우 당사국은 비당사국과도 거래가 가능(제10조)
- 매 2년마다 당사국회의를 개최(제11조)
- 당사국이 협약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무국은 동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동 문제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논의(제13조)
- 일반적인 유보는 불허하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때에 특정한 유보신청 가능(제23조)

● 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2010년 5월 현재)

구분	부속서Ⅰ (약 900종)	부속서Ⅱ (약 32,600종)	부속서Ⅲ (약 300종)
부속서분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으나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학술·연구 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학술·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주요대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랑이(호골), 코뿔소(서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산갑, 천마, 구척, 육종용, 자단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팬(중국) 등

CITES 해당종의 거래

- 부속서에 규정된 CITES 해당종을 수입, 수출, 재수출 또는 해상으로 부터 반입할 경우 국가기관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
- CITES에 의해 관리되는 동·식물종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3개의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 부속서Ⅰ :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거래 허용
 - 부속서Ⅱ : 반드시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나 이용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종
 - 부속서Ⅲ : 최소한 하나의 국가에서 보호되어야 할 종으로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종
-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관리당국(허가체계 관리)과 과학당국(국제거래가 해당종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언)을 정해야 한다.
- 부속서Ⅰ 종
 - 수출허가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수출입 당사국 모두 사전에 거래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수입허가서는 수입의 목적이 종의 생존에 해를 주지 않고, 종을 인수받을 자가 살아있는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표본이 주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후에 발급된다. 거래가 주상업적 목적인지의 여부는 수입의 경우를 말하며 수출의 목적은 상업적일 수 있다.

- 수출허가서는 수입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이 해당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고, 표본이 국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획득되었고, 살아있는 표본의 경우 동 표본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준비되고 선적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발급한다.
- 재수출증명서는 표본이 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고, 살아있는 표본의 경우 표본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준비되고 선적되었으며, 수입국에서 발급한 유용한 수입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 부속서Ⅱ종의 수출입

- 부속서Ⅱ종의 수출입의 경우 수출허가서만 필요로 한다(국가에 따라 수출허가서 발급을 위해 수입허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수출허가서는 수출이 해당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고, 표본이 자국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으며, 살아있는 표본의 경우 동 표본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준비되고 선적되어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 발급한다.
-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를 사전에 국경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속서Ⅲ종의 수출입

-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을 부속서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증명서 또는 해당 표본이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음을 알리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협약전 표본

-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대하여 적용되기 이전에 해당 표본이 획득된 경우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 당국이 협약전 표본이라고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 표본의 획득일자는 살아있거나 죽은 동·식물은 서식지로부터 최초로 제거된 시점, 부분 또는 파생물은 최초 소유 시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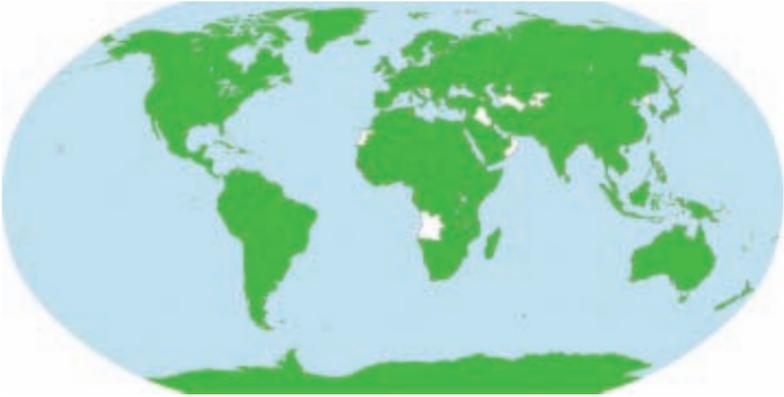
- 협약이 표본에 적용되기 시작한 일자에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경우 해당 당사국에서의 협약 발효 일자를 말하고, 협약 발효 이후에 추가된 표본의 경우 그 표본이 추가된 목록 발효일자를 말한다.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각각 다른 일자에 CITES에 가입하여 각기 상이한 적용일자를 가지므로 해당 표본이 일부 당사국에서는 협약전 표본인 것이 다른 당사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개인 휴대품 및 가재도구, 관광 기념품, 사육 번식 및 인공 번식, 과학적 교류, 순회 전시 물품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EU국가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에서는 개인휴대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엄격한 국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 개인휴대품(시계줄, 안경, 벨트 등) 중 부속서 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소유자의 상주국 밖에서 획득하여 상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허가서가 필요하며,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속서 I에 포함된 표본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식물종은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 사육번식된 종이란 통제된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태어난 부모개체로부터 태어난 개체여야 하며, 그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의문(Conf. 10.16)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육번식된 종의 표본의 수출은 동 종이 야생에 서식하지 않는 국가로의 수출이나 원산지국가로 선언된 국가에 더 이상 서식하지 않아 동 원산지국가로 재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원국 가입현황



■ 회원국 □ 비회원국

(2010.5. 현재 175개국 가입, CITES 홈페이지 참조)

Chapter II

한국의 CITES



● 우리나라의 CITES 관련 법규와 당국 ●

● 1993.7.9 가입, 1993.10.7부터 발효

- '93년경 서각(코뿔소뿔), 웅담, 사향 등 한약재 유통으로 인하여 비난 분위기 고조로 협약가입 필요성 제기
- 사향 및 웅담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의 적응기간을 위해 “곰과(科) 전종 및 사향노루속(屬) 전종”에 대하여는 3년간 유보조건으로 동 협약에 가입

● 관련부처 및 관련법규

관련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해당동·식물	관련법규
환경부	자연자원과	국립 생물자원관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류 등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16조)
		국립 수산과학원	수산생물	농림수산 식품부고시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
식품의약품 안전청	한약정책과	생약연구과	약용 동·식물	약사법
관세청			전종	관세법 (제226조)

●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의 직무

1) 총괄 :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 당사국회의 참석
- CITES 사무국 및 협약 당사국과의 연락
- 협약의 취지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교육 총괄
- 정기보고서 작성(총괄)
 - 협약 부속서 해당 동·식물에 관한 연례보고서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 규제조치 및 행정조치에 관한 2년마다의 보고서

2) 관리당국 : 환경부 자연자원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 CITES 이행을 위한 국내법 또는 국내조치의 정비 또는 개정
- 협약조문 및 부속서 I, II, III의 개정(새로운 부속서의 발표, 유보종 등)에 따른 국내법, 업무처리지침, 통합공고 등의 개정
- 수출·입, 반입, 재수출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발급
-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
- 식별도감 등 표본 식별 방법 또는 수단의 준비
- 정기보고서의 작성(각 기관의 소관업무)

3) 과학당국 :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속서 수재종 표본에 대한 허가서와 실제표본의 감시 지원
- 부속서 개정 및 식별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및 지원

CITES 허가서 및 증명서

문서 종류	발행 조건 및 절차
수출 허가서 (Export perm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아있는 표본이 위협 또는 잔혹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관리 당국이 확인 표본이 적법하게 획득된 것임을 관리 당국에서 확인 제안된 수출 행위가 해당종의 생존에 무해하다는 과학 당국의 증명 필요 관리 당국에서만 수출 허가서 발행
수입 허가서 (Import permi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서 I종에만 적용 제안된 수입 행위가 해당종의 생존에 무해한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과학 당국에서 증명 관리 당국에서만 수입 허가서 발행 ※ 다만, 엄격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당사국들 (예 : 유럽 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II종 표본에도 수입 허가서 필요
재수출 증명서 (Re-export certificat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들이 협약 조항에 따라 수입되었음을 관리 당국이 확인 관리 당국에서만 재수출 증명서 발행
기타 증명서 (Other certificates)	<p>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우 사용 :</p> <p>사육되거나 인공 번식된 표본, 협약 전 표본, 순회 전시, 해상 반입(Introduction from the Sea), 부속서 III종의 원산지 증명서, 과학적 교류를 위한 라벨 부착</p>

● 국내 이행법 체계 - 의약품 이외의 야생 동·식물 ●

● 관리당국

환경부 자연자원과,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 제16조)

● 대상 동·식물

(2010년 5월 현재)

구분	계(종수)	부속서 I	부속서 II	부속서 III	비고	
계	1,153	575	321	257		
동물	소계	979	474	255	250	
	수류 (고래목)	330 (22)	197 (21)	66 (1)	67	고래목 포함
	조류	380	166	65	149	
	파충류	172	62	77	33	
	양서류	20	9	11		
	판새어류	3		3		
	어류	12	7	5		
	해삼류	1			1	
	거미류	6		6		
	곤충류	12	4	8		
	거머리류	1		1		
	이매패류	31	26	5		
	복족류	3	1	2		
	산호류	4		4		
히드라충류	2		2			
식물	174	102	65	7		



● 관련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국제적멸종위기종의 정의)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7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의 취소 등)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허가면제 대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 기록)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 신고)

●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식물

- CITES 부속서 I, II, III에 기재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판새어류, 폐어류, 해삼류, 거미류, 곤충류, 거머리류, 이매패류, 복족류, 산호류, 히드라충류, 식물류

● 조류 · 포유류의 수출 · 입 허가기준(시행령 제12조제1항)

-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공원 · 관광지 · 동물원 · 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조류 · 포유류의 가공품 및 고래류를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I 에 포함된 동 · 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동 · 식물의 수출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2) 동 · 식물이 동 · 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있는 동 · 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협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4) 동 · 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동 · 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2) 살아있는 동 · 식물의 경우에는 수령예정자가 그 동 · 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 
- (3) 동·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 허가

- (1) 동·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동·식물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 협약부속서 II 에 포함된 동 · 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동·식물의 수출 또는 반출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2) 동·식물이 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동·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 (2) 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3)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수출 허가

- (1) 동·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된 동·식물

■ 수출 또는 반출 허가

- (1) 동·식물이 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 또는 반입 허가

- (1) 동·식물의 종을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식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2) 동·식물의 종을 협약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수출 승인

- (1) 동·식물이 이 영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당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적법하게 사육·포획 또는 채취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에 한한다]
-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cm, 세로 10.1 cm 이상 크기의 사진(가족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cm, 세로 4 cm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확인 서명한 문서 등도 가능)
-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cm, 세로 10.1 cm 이상 크기의 사진(가족제품 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cm, 세로 4 cm 이상 크기의 가족견본)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I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부속서Ⅲ에 당해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도변경 승인

-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로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 박물관 및 학술연구기관 그밖에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기증하는 경우
 -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사목적 또는 번식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을 학술연구목적 또는 관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 그 외 수입·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 양도 · 폐사 및 질병감염에 관한 신고의 수리

■ 허가를 받고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에 처한 종을 양도 및 폐사,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육장소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양도 시 :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양도 하고자 하는 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고자 하는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사육된 경우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사(질병감염) 시 : 국제적멸종위기종폐사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수의사진단서, 폐사(질병감염)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거처분, 반송 및 몰수

■ 살아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수입 또는 반입허가에 의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또는 진열하고 있는 경우 동·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수거 하여 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야생동식물보호법 제17조제2항)

■ 보호조치되거나 몰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수출국과 협의 후 수출국의 비용부담으로 반송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정한 시설로 이송·보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7조 제3항)

■ 보호시설 : 국립환경연구원, 수목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생물자원 보전시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곤충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 등(시행령 제14조)

● 허가 면제 대상

-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개인의 휴대품이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협약부속서 I 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협약부속서 II 에 포함된 동·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동·식물
- 인공증식된 부속서 II 식물의 허가면제사항(시행령 제12조제2항)
- 인공증식된 식물중 식물방역법 제11조에 의거 식물의 검사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수입국에서 CITES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허가서 등을 요구시 지방환경청에서는 수출허가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 허가면제 대상식물(부속서Ⅱ)

- 선인장과, 소철과, 알로에속, 난초과 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
-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고시된 난초과 중 심비디움,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 반다 등의 인공증식된 교잡종

■ 수출허가 면제대상종

-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5-21호('05.2.10)) 참조

● 벌칙 및 과태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법 제16조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법 제16조제3항)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법 제16조제4항)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 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법 제16조제7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자(법 제16조제1항)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법 제18조)

■ 몰수

-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16조)
- 허가 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법 제16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6항)

● 국내 이행법 체계 - 약용 동·식물 ●

● **관리당국**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 **법적근거** : 약사법

● 약사법 개정

- 의약품 등의 용도로 CITES품목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반입)허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첨부를 의무화.
※ 다만, 곰과 사향노루의 가공품중 의약품(웅담·사향)에 대하여는 '96.10.7일부터 적용
- 코뿔소뿔·호랑이뼈의 수입·판매와 이를 사용한 의약품의 제조·조제행위 및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의 판매·저장·진열행위 금지(약사법 제43조)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법규조항

**약사법
(2010.
5.27.)**

제43조(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 등)

①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누구든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p>약사법 (2010. 5.27.)</p>	<p>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1. 제43조를 위반한 자</p>
<p>약사법 시행규칙 (2010. 3.19.)</p>	<p>제52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① 법 제43조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이하 "야생 동·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 시마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수출(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p> <p>1. 수출하는 경우 (생략) 2. 수입하는 경우 (생략) 3. 반입하는 경우 (생략)</p>
<p>수입 의약품등 관리규정 (2010. 4.26.)</p>	<p>제10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관리) ① 「약사법」 제43조에 따라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된 웅담 또는 사향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단위별로 제품마다 식약청장이 발급하는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약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표2에 따른 CITES 인증증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는 웅담·사향의 수입대장과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 CITES 해당 한약재의 수출 · 입 요령 ●

● 근거

- 약사법 제43조(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 등)
-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10조(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관리)
- 통합공고 제31조 및 제35조(지식경제부 고시)

- **수출입허가 대상** : CITES 부속서 I, II, III에 기재된 동·식물 중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

● 수출 · 입 허가 시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

1) 수입하는 경우

- 자격 : 약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 수입자
- 구비서류 및 양식
 - CITES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제43호)
 - CITES에 의하여 당해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SALES CONTRACT)
- 허가사항 통보 : 수입허가서 교부
- 수출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통관 시 세관장에게 제출

2) 수출하는 경우

- 자격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신고를 필한 자
- 구비서류 및 양식
 - CITES 수출허가 신청서(별지 제43호)
 - 외국산 야생 동·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때에는 CITES에 의하여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허가사항 통보 : 수출허가서 및 CITES 수출증명서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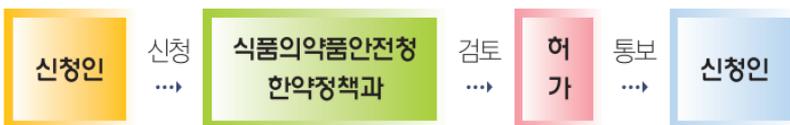
3) 반입하는 경우

-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허가 시 확인 및 검토사항

- 수출국 수출증명서(또는 재수출증명서) 진위여부
- 약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자,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신고 여부
- 부속서 수재등급 등 내용검토

● 수출 · 입 절차



※ 수출·입 허가신청서는 식약청 소비자담당관실, KFDA 행정포탈시스템에서 접수

〈별지 제43호 서식〉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input type="checkbox"/> 수출 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반입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상호(명칭)
	③ 소재지	(전화:)
품 목	④ 보통명 (제품명)	⑤ 학 명
	⑥ 수 량 (제품의 수량)	⑦ 원산지
⑧ 용 도 (사업계획)		
「약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금액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문 의 처

- CITES 업무 총괄 :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02)2110-6560
- CITES 국내 이행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3
- CITES 과학 당국

구 분	담당기관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수산생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	(051) 720-2781	(051) 720-2828	http://www.nfrdi.go.kr
약재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02) 380-1892	(02) 385-0297	http://www.kfda.go.kr
기타 일반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	(032) 590-7177	(032) 590-7260	http://www.nibr.go.kr

※ 허가서/증명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표본 식별 자문

■ CITES 허가서 발급 기관

구 분	담당기관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의약품용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02) 380-1863	(02) 388-6524	http://www.kfda.go.kr
의약품용 외 일반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 790-2844(수입) (031) 790-2848(수출)	(031) 790-2849	http://hg.me.go.kr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 211-1644	(055) 211-1659	http://ndg.me.go.kr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 865-0743	(042) 865-0749	http://gg.me.g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 605-5238	(062) 571-5239	http://yeongsan.me.go.kr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 760-6011	(033) 765-1326	http://wonju.me.go.kr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 760-2545	(053) 761-0128	http://daegu.me.go.kr
	전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 270-1853	(063) 270-1859	http://jeonju.me.go.kr

※ 통관 관련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1

Chapter III

CITES

해당 한약재

CITES 해당 한약재

품 목	학 명	부속서	비 고
서각(犀角)	<i>Rhinoceros unicornis</i> <i>Rhinoceros sondaicus</i> <i>Dicerorhinus sumatrensis</i> 등	I	수입 및 사용금지
호골(虎骨)	<i>Panthera tigris</i>	I	수입 및 사용금지
웅담(熊膽)	<i>Ursus arctos</i> 등	I · II	
사향(麝香)	<i>Moschus berezovskii</i> <i>Moschus chrysogaster</i> <i>Moschus moschiferus</i>	I · II I · II I · II	
영양각(羚羊角)	<i>Saiga tatarica</i> <i>Gazella cuvieri</i> <i>Gazella leptoceros</i> <i>Gazella dorcas</i>	II I I III(알제리, 투지니아)	
목향(木香)	<i>Aucklandia lappa</i>	I	= <i>Saussurea costus</i> <i>Saussurea lappa</i>
구척(狗脊)	<i>Cibotium barometz</i>	II	
노회(蘆薈)	<i>Aloe ferox</i> <i>Aloe africana</i> <i>Aloe spicata</i>	II	
백급(白芨)	<i>Bletilla striata</i>	II	
사담(蛇膽)	<i>Naja naja atra</i>	II	
산자고(山慈姑)	<i>Cremastra appendiculata</i>	II	
석곡(石斛)	<i>Dendrobium nobile</i> 등	II	
어교(魚膠)	<i>Acipenser sinensis</i>	II	
육종옹(肉蓯蓉)	<i>Cistanche deserticola</i>	II	

품 목	학 명	부속서	비 고
인도사목(印度蛇木)	<i>Rauvolfia serpentina</i>	Ⅱ	
자단향(紫檀香)	<i>Pterocarpus santalinus</i>	Ⅱ	
주목(朱木)* 파클리탁셀* (Paclitaxel)	<i>Taxus chinensis</i> <i>Taxus cuspidata</i> <i>Taxus fauna</i> <i>Taxus sumatrana</i> <i>Taxus wallichiana</i>	Ⅱ	
적전(赤箭)	<i>Gastrodia elata</i>	Ⅱ	
천마(天麻)	<i>Gastrodia elata</i>	Ⅱ	
천산갑(穿山甲)	<i>Manis spp.</i>	Ⅱ	
침향(沈香)	<i>Aquilaria agallocha</i>	Ⅱ	= <i>Aquilaria malaccensis</i>
해마(海馬)	<i>Hippocampus spp.</i> 등	Ⅱ	우리나라는 유보함
호황련(胡黃蓮)	<i>Picrorhiza kurroa</i>	Ⅱ	
미삼(尾蔘) 인삼(人蔘) 홍삼(紅蔘)	<i>Panax ginseng</i>	Ⅱ(러시아)	
귀판(龜板)	<i>Chinemys reevesii</i>	Ⅲ(중국)	= <i>Mauremys reevesii</i>



부속서 I 수재종 - 국제 거래 금지

1) 서각 (犀角, Rhinoceros Horn)

- 기원 : 인도코뿔소(*Rhinoceros unicornis*), 자바코뿔소(*Rhinoceros sondaicus*), 수마트라코뿔소(*Dicerorhinus sumatrensis*) 등의 뿔
- 분포 : ① 인도코뿔소(great Indian rhinoceros; greater one-horned rhinoceros)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멸종), 부탄, 인도, 파키스탄(멸종)
② 자바코뿔소(Javan rhinoceros; lesser one-horned rhinoceros) : 라오스(멸종?), 말레이시아, 미얀마(멸종?), 방글라데시(멸종), 베트남(멸종), 인도(멸종), 인도네시아, 중국(멸종?), 캄보디아(멸종?), 태국(멸종?)
③ 수마트라코뿔소(hairy rhinoceros, Sumatran rhinoceros) : 라오스(멸종?),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멸종), 베트남, 브루나이(멸종), 인도(멸종?),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멸종?), 태국
- 효능 : 凉血止血, 瀉火解毒, 安神定驚
- CITES: 1975.7.1. CITES 부속서 I 수재, 1977.2.4. 코뿔소과 전체 포함.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수입·판매 및 이를 사용한 의약품의 제조·조제·판매·저장·진열 금지



◀ 인도코뿔소
(*Rhinoceros unicornis*)



◀ 서각(犀角)

2) 호골 (虎骨, Tiger Bone)

- 기원 : 호랑이(*Panthera tigris*)의 뼈
- 분포 : 호랑이(tiger) : 그루지아(멸종), 네팔, 대한민국(멸종), 라오스, 러시아연방,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싱가포르(멸종), 아프가니스탄(멸종?), 우즈베키스탄(멸종), 이라크(멸종), 이란(이슬람공화국)(멸종), 인도, 인도네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멸종?), 중국, 카자흐스탄(멸종),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멸종), 타지키스탄(멸종), 태국, 터키(멸종), 투르크메니스탄(멸종), 파키스탄(멸종)
- 효능 : 祛風定痛, 強筋健骨
- CITES : 1975.7.1. CITES 부속서 I 수재(알타이카 아종을 제외한 모든 아종 포함)
1987.10.22 CITES 부속서 I 수재(모든 아종 포함)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수입·판매 및 이를 사용한 의약품의 제조·조제·판매·저장·진열 금지



▲ 호랑이(*Panthera tigris*)



▲ 호골(虎骨)

부속서 I 수재종 - 재배품 거래 가능

3) 목향 (木香, Costus Root)

- 기원 : 목향(木香) *Aucklandia lappa*의 뿌리(KHP)
- 분포 : 목향(木香; = *Saussurea lappa* = *Saussurea costus*)
: 인도, 파키스탄
- 효능 : 行氣止痛, 溫中和胃
- CITES : 1975.7.1. CITES 부속서Ⅱ 수재(뿌리만 해당)
1985.8.1. CITES 부속서Ⅰ으로 상향조정(모든 부분과 파생물 포함).
현재 재배품을 부속서Ⅱ에 준하여 거래



◀ 목향(*Aucklandia lappa*)



▲ 목향(木香)



● 부속서 I, II 수재종 - 분포지역에 따라 일부 거래 ●

4) 웅담 (熊膽, Brown bear gall bladder)

- 기원 : 불곰 *Ursus arctos* 또는 기타 근연동물의 담즙을 말린 것(KHP)
- 분포 : 불곰(brown bear) :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멸종), 네팔, 노르웨이, 덴마크(멸종), 독일(멸종), 라트비아, 러시아연방, 레바논(멸종), 루마니아, 리에켄스타인(멸종), 리투아니아(멸종), 마케도니아공화국(구 유고슬라비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몽골, 미국, 벨라루스, 벨기에(멸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탄(멸종?),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멸종),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멸종),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영국(멸종),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요르단(멸종),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멸종), 이탈리아, 인도,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체코공화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포르투갈(멸종),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효능 : 淸熱解毒, 止癢, 明目
- CITES : 1975.7.1. 부속서 I 수재 (이탈리아종)
1975.7.1. 부속서 II 수재 (북아메리카종)
1979.6.28. 부속서 I 수재 (*Ursus arctos isabellinus*)
1983.7.29. 부속서 II 로 하향조정 (이탈리아종)
1983.7.29. 부속서 II 수재 (유럽 분포종)

1990.1.18. 부속서 I 수재

(부탄, 중국, 몽고, 멕시코 분포종)

1992.6.11. 부속서 II 수재 (나머지 분포종)

(담낭 2004년 루마니아 200, 2005년 루마니아 200,
2006년 루마니아 200)



◀ 불곰(*Ursus arctos*)



▲ 웅담(熊膽)



5) 사향 (麝香, Musk)

- 기원 : 난쟁이사향노루 *Moschus berezovskii*, 산사향노루 *Moschus chrysogaster* 또는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KHP)
- 분포 : ① 사향노루(Siberian Musk Deer) :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카자흐스탄
② 난쟁이사향노루(Chinese Forest Musk Deer; Dwarf Musk Deer; Forest Musk Deer; = *Moschus anhuiensis*, *Moschus chrysogaster berezovskii*) : 베트남, 중국
③ 산사향노루(Alpine Musk Deer; Himalayan Musk Deer ; = *Moschus cupreus*, *Moschus moschiferus*, *Moschus sifanicus*) : 네팔, 부탄, 인도, 중국
- 효능 : 開竅醒神, 活血通經, 消腫止痛
- CITES : 1979.2.16. 부속서 I 수재(사향노루 ; 히말라야 분포종), 부속서 II 사향노루속 (히말라야 분포종 제외), 1979.6.28. 부속서 I 수재 (산사향노루 ; 부탄, 인도, 네팔 분포종), 부속서 II 수재 (산사향노루 나머지 지역 분포종과 난쟁이사향노루) 1983.7.29. 부속서 I 수재 (사향노루속 아프가니스탄, 부탄, 인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분포종), 부속서 II 수재 (부속서 I 수재종을 제외한 사향노루속 전체) (musk 1997년 러시아연방 40kg, 1998년 러시아연방 35kg, 1999년 러시아연방 63.5kg, 1999년 러시아연방 71.1kg, 2000년 러시아연방 83255g, 2001년 러시아 연방 76200g, 2003년 러시아연방 84.2kg, 2004년 러시아연방 79.4kg, 2005년 러시아연방 59.5kg,

2006년 러시아연방 70kg, 2007년 러시아연방 68.3kg)

(musk pod 2008년 러시아연방 3164 pieces, 2009년 러시아연방 2805 pieces)

● 요약

	부속서 I	부속서 II
사향노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향노루 히말라야 분포종 (1979.2.16) - 사향노루속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 분포종(1983.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말라야 분포종을 제외한 사향노루속 (1979.2.16) - 부속서 I 수재종을 제외한 사향노루속 전체(1983.7.29)
난쟁이사향노루	-	난쟁이사향노루(1979.6.28.)
산사향노루	산사향노루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분포종 (1979.6.28.)	산사향노루 나머지 지역 분포종(1979.6.28.)



▲ 사향(麝香)



▲ 사향가루

부속서Ⅱ 수재종 - 수출 · 입시 승인 필요

6) 구척 (狗脊)

- 기원 : 금모구척(金毛狗脊) *Cibotium barometz*의 뿌리줄기(KP)
- 분포 : 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 효능 : 補肝腎, 除風濕, 健腰脚, 利關節
- CITES : 1985.8.1. 부속서Ⅱ 수재(#1),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출쿼터량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중국 : 2001년 130,000kg, 2002년 130,000kg, 2003년 130,000kg, 인도네시아 : 2006년 2500kg, 2007년 500kg, 2008년 450kg, 2009년 900kg, 2010년 900kg)
2000.7.19. *Cibotium barometz*와 디소니아속(미국 분포종)을 제외한 디소니아과 부속서Ⅱ 삭제
2007.9.13. 주해 개정



◀ 구척(*Cibotium barome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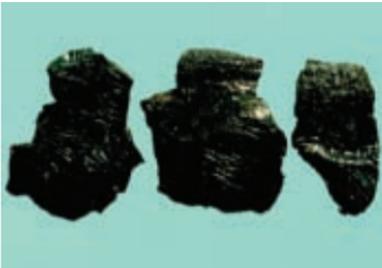


▲ 구척(狗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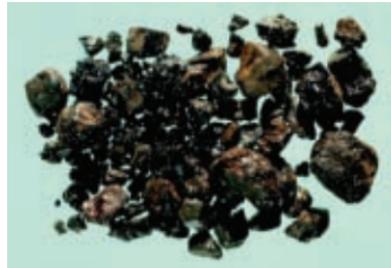


7) 노회 (蘆薈, Al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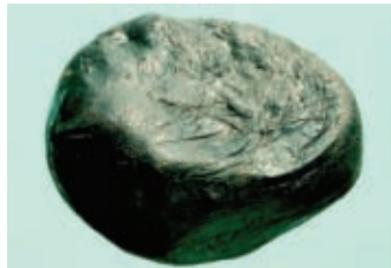
- 기원 : 호망각노회(好望角蘆薈) *Aloe ferox*, *Aloe africana* 또는 *Aloe spicata*의 잡종의 잎에서 얻은 액즙(液汁)을 건조한 것(KHP)
- 분포 : 남아프리카
- 효능 : 瀉下, 淸肝, 殺蟲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 (알로에속 전체), 1985.8.1. 주해 개정(부속서Ⅰ 수재종 제외), 1995.2.16. 주해 개정, 2007.9.13. 주해 개정(*Aloe vera* = *Aloe barbadensis* 제외, *Vanilla*속 제외)



▲ 노회(蘆薈)



▲ 노회(蘆薈)



8) 백급 (白芨)

- 기원 : 자란 *Bletilla striata*의 덩이줄기(KHP)
- 분포 : 자란(purple ground orchid) :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 효능 : 收斂止血, 消腫生肌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 (난초과 전체)
1985.8.1. 주해 개정(#7)
2003.2.13. 주해 개정(#8)
2005.1.12. 주해 개정
2007.9.13. 주해 개정(#1)



◀ 자란(*Bletilla striata*)



◀ 백급(白芨)

9) 사담 (蛇膽, chinese cobra gallbladder)

- 기원 : 안경사 *Naja naja atra*의 담낭(KHP)
 - ※ 다른 기원종 : 금환사 *Bungarus fasciatus*, 삼각선사 *Elaphe radiata*, 과수용사 *Ptyas korros*, 오초사 *Zaocys dhumnades* 또는 기타 근연동물
- 분포 : 안경사(Chinese Cobra, Chinese Spitting Cobra ; = *Naja atra*) : 대만,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홍콩
- 효능 : 燥濕, 殺蟲, 明目
- CITES : 1990.1.18. 부속서Ⅱ 수재



◀ 사담(蛇膽) - 안경사

[참고]



◀ 사담(蛇膽) - 오보사



◀ 사담(蛇膽) - 오초사

10) 산자고 (山慈姑)

- 기원 : 약난초 *Cremastra appendiculata*의 덩이뿌리(KHP)
- 분포 : 러시아연방, 일본
- 효능 : 淸熱解毒, 消癰散結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 (난초과 전체)
1985.8.1. 주해 개정(#7)
2003.2.13. 주해 개정(#8)
2005.1.12. 주해 개정
2007.9.13. 주해 개정



▲ 약난초(*Cremastra appendiculata*)



▲ 산자고(山慈姑)

11) 석곡 (石斛)

- 기원 : 금채석곡(金釵石斛) *Dendrobium nobile*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지상부(KHP)
- 분포 :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부탄, 인도, 중국, 태국
- 효능 : 益胃生津, 滋陰清熱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 (난초과 전체)
1985.8.1. 주해 개정(#7)
2003.2.13. 주해 개정(#8)
2005.1.12. 주해 개정
2007.9.13. 주해 개정



◀ 금채석곡 *Dendrobium nobile*



▲ 석곡(石斛)



12) 어교 (魚膠)

- 기원 : 철갑상어 *Acipenser sinensis* 또는 기타 근연동물의 부레(KHP)
 - ※ 다른 기원종 : 대구 *Gadus macrocephalus* 또는 기타 근연동물
- 분포 : 철갑상어(chinese sturgeon ; = *Acipenser kikuchii*) : 중국
- 효능 : 補腎益精, 滋養筋脈, 止血, 散瘀, 消腫
- CITES : 1998.4.1. 부속서Ⅱ 수재

[참고자료]

현재 철갑상어의 부레는 CITES 대상 품목으로 유통이 되지 않으며 아래 자료는 철갑상어의 부레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 어교(魚膠)



◀ 어교(마어두)



◀ 어교(문어두)



◀ 어교(민어)

13) 영양각 (羚羊角)

- 기원 : 영양 *Gazella subgutturosa*, 고비영양(高鼻羚羊) *Saiga tatarica* 또는 기타 근연동물 (소과 Bovidae)의 뿔(KHP)
- 분포 : ① 영양(Saiga, Saiga antelope) : 러시아연방, 몰도바 (멸종),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멸종), 중국(멸종),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폴란드(멸종)
② *Gazella dama*(Addra Gazelle, Dama Gazelle ; = *Nanger dama*) : 나이지리아(멸종?), 니제르, 리비아 (멸종), 말리, 모로코(멸종), 모리타니아(멸종), 부르키나파소, 서사하라, 세네갈(재도입), 수단, 알제리, 이집트, 차드, 튀니지(멸종)
③ *Gazella cuvieri*(Cuvier's gazelle, Edmi Gazelle, Idmi) : 모로코, 서사하라, 알제리, 튀니지
④ *Gazella leptoceros*(Rhim Gazelle, Sand Gazelle, Slender-horned Gazelle): 니제르, 리비아, 말리, 알제리, 이집트, 수단, 차드, 튀니지
⑤ *Gazella dorcas*(Dorcas Gazelle) : 나이지리아(멸종), 니제르, 리비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 서사하라, 세네갈(재도입),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지부티, 차드, 토고, 튀니지
⑥ *Gazella gazella*(Mountain Gazelle) : 레바논(멸종?),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멸종)
- 효능 : 平肝息風, 清肝明目, 清熱解毒
- CITES : ① 고비영양(高鼻羚羊) *Saiga tatarica*
1995.2.16. 부속서Ⅱ 수재

② *Gazella dama*

1983.7.29. 부속서 I 수재

③ *Gazella cuvieri*, *Gazella leptoceros*

1976.4.22. 부속서Ⅲ 수재(튀니지아)

2007.9.13. 부속서 I 수재

④ *Gazella dorcas*

1976.4.22. 부속서Ⅲ 수재(튀니지아)

2008.2.12 부속서Ⅲ 수재(알제리)

⑤ *Gazella gazella*

1976.4.22. 부속서Ⅲ 수재(튀니지아)

1977.7.1. 부속서Ⅲ에서 삭제



◀ 영양각(羚羊角)-고비영양



◀ 영양각(羚羊角)

14) 육종용 (肉蓯蓉)

- 기원 : 육종용(肉蓯蓉) *Cistanche deserticola*의 육질경 (肉質莖)(KHP)

※ 다른 기원종 : 기타 동속 근연식물

- 분포 : 육종용(desert cistanche) : 몽고, 중국
- 효능 : 補腎益精, 潤燥滑腸
- CITES : 2000.7.19. 부속서Ⅱ 수재,
2003.2.13. 주해 삭제
2005.1.12. 주해 개정(#1)
2007.9.13. 주해 개정(#1)



◀ 육종용(*Cistanche desertic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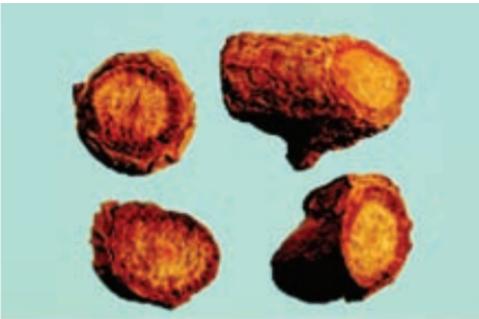
▲ 육종용(肉蓯蓉)

15) 인도사목 (印度蛇木)

- 기원 : 인도사목(印度蛇木) *Rauvolfia serpentina*의 뿌리(KHP)
※ 다른 기원종 : 기타 동속 근연식물
- 분포 : 인도사목(Snake-root devil-pepper) :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 효능 : 解熱, 治赤痢
- CITES : 1990.1.18. 부속서Ⅱ 수재(#2)
2007.9.13. 주해 개정(#2: 종자, 꽃가루, 소매목적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 대상)



◀ 인도사목(*Rauvolfia serpentina*)



◀ 인도사목(印度蛇木)

16) 인삼 (人蔘), 홍삼 (紅蔘), 미삼 (尾蔘)

- 기원 : ① 인삼 *Panax ginseng*의 뿌리로서 그대로 또는 가는 뿌리와 코르크층을 제거한 것(KP)
② 홍삼 *Panax ginseng*의 뿌리를 찢은 것(KP)
③ 미삼 *Panax ginseng*의 가는 뿌리(KHP)
- 분포 : 인삼(ginseng, red ginseng) : 대한민국(명종), 러시아 연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 효능 : 大輔元氣, 固脫生津, 安神
- CITES : 2000.07.19. 부속서Ⅱ 수재(러시아연방 분포종. 전체 또는 썬어진 뿌리, 뿌리 일부분을 대상으로 함. 가루, 알약, 추출물, 강장제, 차, 과자류와 같은 가공품이나 파생물은 제외)
2007.09.13. 주해 개정(#3 ; 러시아연방 분포종에 한함. 다른 지역의 분포종은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 또는 썬어진 뿌리, 뿌리 일부분)



▲ 인삼



▲ 홍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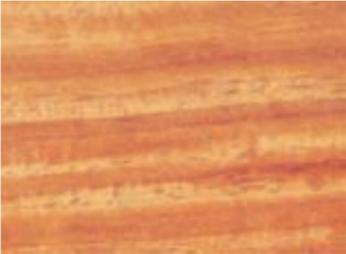
▲ 미삼

17) 자단향 (紫檀香)

- 기원 : 紫檀 *Pterocarpus santalinus*의 심재(KHP)
- 분포 : 자단향(red sandalwood; saunderswood) : 인도
- 효능 : 消腫, 止血, 止痛
- CITES : 1995.2.16. 부속서Ⅱ 수재(#6)
2007.9.13. 주해 개정(#7, 통나무, 우드칩, 가루 및
추출물 대상)



◀ 자단향(紫檀香)



18) 적전 (赤箭), 천마 (天麻)

- 기원 : ① 적전 : 천마 *Gastrodia elata*의 지상부(KHP)
② 천마 : 천마 *Gastrodia elata*의 덩이줄기(KP)
- 분포 : 네팔, 대만,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부탄, 인도,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 효능 : ① 적전 : 治熱毒癰腫
② 천마 : 平肝息風, 定驚止癇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난초과 전체)
1985.8.1. 주해 개정(#7)
2003.2.13. 주해 개정(#8)
2005.1.12. 주해 개정
2007.9.1. 주해 개정



◀ 천마(*Gastrodia elata*)



▲ 적전(赤箭)



▲ 천마(天麻)



▲ 천마(天麻) - 절편



▲ 천마(天麻) - 생것

19) 천산갑(穿山甲)

- 기원 : 천산갑 *Manis pentadactyla* 또는 기타 동속 근연동물의 인갑(鱗甲)(KHP)
- 분포 : 천산갑(Chinese Pangolin) : 네팔,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태국, 캄보디아, 홍콩
- 효능 : 活血通經, 下乳, 消腫排膿
- CITES : 1975.7.1. 부속서Ⅱ 수재
1995.2.16. 능리속 전체 부속서Ⅱ 수재
2000.7.19. 상업목적으로 거래되고 야생에서 포획된 표본에 대해 zero 수출쿼터제 실시



▲ 천산갑(穿山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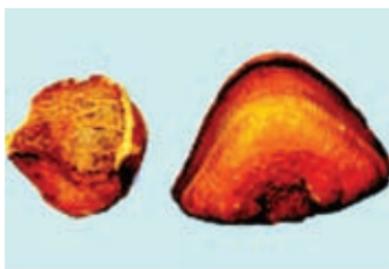
▲ 천산갑(穿山甲)



▲ 천산갑(穿山甲)



▲ 포산갑(袍山甲)



20) 침향(沈香)

- 기원 : 침향나무 *Aquilaria agallocha*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 (KHP)
- 분포 : 침향(agarwood, albewood, eaglewood = *Aquilaria malaccensis*) :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싱가포르,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 효능 : 降氣溫中, 暖腎納氣
- CITES : 1995.2.16. 부속서Ⅱ 수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출쿼터제 실시(인도네시아 : 1999년 270,000kg, 2002년 75,000kg ~ 2006년 50,000kg, 말레이시아 : 2007년 200,000kg, 2008년 180,000kg, 2009년 205,000kg, 2010년 205,000kg)
2007.9.13. 주해 개정(#1)



◀ *Aquilaria* spp.



▲ *Aquilaria* spp.



▲沉香(沈香)



▲沉香(沈香)



▲沉香(沈香)

21) 파클리탁셀 (paclitaxel)

- 기원 : 주목 *Taxus cuspidata*, *T. chinensis*, *T. fuana*, *T. sumatrana*,
*T. wallichiana*의 껍질 또는 잎에서 추출한 성분(KP)
- 분포 : ① 주목 *T. cuspidata*(Japanese yew) :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일본, 중국
② *T. chinensis*(Chinese yew) :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
③ *T. sumatrana* : 대만
④ *T. wallichiana*(Himalayan yew; = *Taxus baccata*
wallichiana) : 네팔,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부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국, 파키스탄
- 효능 : 항암제
- CITES : ① *T. wallichiana*
1995.2.16 부속서Ⅱ 수재(추출성분 제외)
2005.1.12. 주해 개정 (추출성분 포함)
2007.9.13. 주해 개정(#10 ; 종자, 꽃가루, 소매목적
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
대상)
② *T. chinensis*, *T. fuana*, *T. sumatrana*
2005.1.12. 부속서Ⅱ 수재 (추출성분 포함)
2007.9.13. 주해 개정(#10; 종자, 꽃가루, 소매
목적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 대상)
③ *T. cuspidata*
2005.1.12. 부속서Ⅱ 수재 (추출성분 포함)
2007.9.13. 주해 개정(#10; 종자, 꽃가루, 소매
목적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 대상, 살아있는 재배종 및 교잡종은 제외)



▲ 주목 (*Taxus cuspidata*)



▲ 주목 (*Taxus cuspidata*)

22) 호황련 (胡黃蓮)

- 기원 : 호황련 *Picrorhiza kurroa*의 뿌리줄기(KHP)
- 분포 : 네팔, 부탄, 인도
- 효능 : 退虛熱, 除疴熱, 清濕熱
- CITES : 1997.9.18. 부속서Ⅱ 수재(뿌리 및 뿌리의 부분물 대상)
2007.9.13. 주해 개정(#2: 종자, 꽃가루, 소매목적으로 포장된 완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파생물 대상)



▲ 호황련(胡黃蓮)

부속서 II 수재종 - 우리나라는 유보

23) 해마 (海馬)

- 기원 : 천문해마 *Hippocampus coronatus* 등의 동물체(KHP)
- 분포 : 천문해마(Crowned seahorse; = *Hippocampus fasciatus*) : 일본, 인도양(동부, 서부), 태평양(북서부, 중서부)
- 효능 : 補腎壯陽, 調氣活血
- CITES : 2004.5.15. 해마속 전체 부속서 II 수재
2004.5.15. 협약적용 유보(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 선문해마



▲大海마(북해마)



▲ 삼반해마



▲ 호미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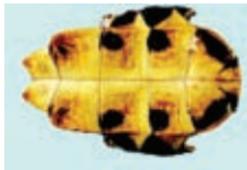
부속서Ⅲ 수재종

24) 귀판(龜板)

- 기원 : 남생이 *Chinemys reevesii*의 복갑(腹甲) 또는 배갑(背甲)(KHP)
- 분포 : 남생이(Reeves's turtle ; = *Mauremys reevesii*, *Damonia reevesii*, *Damonia unicolor*, *Emys japonica*, *Emys reevesii*, *Emys vulgaris picta*, *Geoclemys grangeri*, *Geoclemys paracaretta*) : 대만, 대한민국, 미국(도입),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캐나다(도입), 홍콩,
- 효능 : 滋陰, 潛陽, 補腎, 健骨
- CITES : 2005.2.17. 부속서Ⅲ 수재(중국)



▲ 귀판(龜板) - 배갑(背甲)



▲ 귀판(龜板) - 복갑(腹甲)

부록

CITES 협약문

[한글번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원문(영문)은 CITES 홈페이지(www.cite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약당사국은,
아름답고 다양한 형태의 야생 동식물이 현세대 및 후세대를 위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구 자연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미적·과학적·문화적·여가적 및 경제적측면에서 야생 동식물의 점증하는 가치를 의식하며,
국민과 국가가 야생 동식물의 최선의 보호자이고 또한 보호자여야 함을 인정하고,
국제무역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부터 특정 야생 동식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성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 “종”이라 함은 종, 아종 또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개체군을 말한다.

나. “표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살아있거나 죽은 동·식물
- (2) 동물의 경우
 - 부속서Ⅰ 및 Ⅱ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3) 식물의 경우
 -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부속서Ⅱ 및 Ⅲ에 포함된 종에 대하여는, 종과 관련하여 부속서Ⅱ 및 Ⅲ에 규정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파생물
- 다. “거래”라 함은 수출·재수출·수입 및 해상으로부터 반입을 말한다.
- 라. “재수출”이라 함은 이전에 수입되었던 표본의 수출을 말한다.
- 마. “해상으로부터 반입”이라 함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해양환경에서 획득된 종의 표본을 특정국가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바. “과학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과학당국을 말한다.
- 사. “관리당국”이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의 관리당국을 말한다.
- 아. “당사국”이라 함은 이 협약이 발효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1. 부속서Ⅰ은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모든 종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종의 생존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가되어야 한다.
2. 부속서Ⅱ는 다음 종을 포함한다.
 - 가. 현재 반드시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생존을 위협하는 이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표본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 나. 가호에 규정된 일부 종의 표본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
3. 부속서Ⅲ은 당사국이 이용을 방지 또는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으로 확인하고 또한 거래 통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한 종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Ⅰ, Ⅱ 및 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Ⅰ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한다.



- 가. 수출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출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다.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 라.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에 대한 수입허가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3. 부속서 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허가서와 수출허가서 또는 수입허가서와 재수출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입이 관련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나. 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의 수령 예정자가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다. 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4. 부속서 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재수출하기 위하여는 재수출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국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나.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 다.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수입허가서가 살아있는 표본에 대하여 발급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5. 부속서 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해상으로부터 반입하기 위하여는 반입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나.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의 수령 예정자가 표본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 4 조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수출국의 과학당국에서 표본의 수출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다.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당사국의 과학당국은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에 대하여 자기나라가 발급한 수출허가서와 표본의 실제 수출을 감시한다. 이러한 종이 분포 지역의 생태계 안에서 역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또한 부속서Ⅰ에 포함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의 표본의 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과학당국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과학당국은 종의 표본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를 적절한 관리당국에 조언한다.
4.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재수출하기 위하여는 재수출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재수출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국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나.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해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6.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해상으로부터 반입하기 위하여는 반입국의 관리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반입국의 과학당국에서 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나.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취급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7. 제6항에 규정된 증명서는 국내의 다른 과학기관 또는 적절한 경우 국제적 과학기관과 협의하여 과학당국의 자문에 따라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체수의 표본을 반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5 조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에 대한 규제

1.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종을 부속서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표본이 동식물 보호에 관한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획득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 나.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준비되어 선적될 것으로 인정한 경우
3.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Ⅲ에 포함된 종의 표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을 부속서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수출의 경우,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이라고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은 이를 해당 표본에 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준수되었다는 증거로 인정한다.

제 6 조

허가서 및 증명서

1.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서와 증명서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허가서는 부속서Ⅳ의 양식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며, 발급된 날부터 6월 안에 수출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3. 허가서 또는 증명서에는 이 협약의 명칭,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관리

- 당국의 명칭·납인 및 관리당국이 부여하는 통제번호가 포함된다.
4. 관리당국이 발급하는 허가서 또는 증명서의 사본에는 사본임을 명시하고, 이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정해진 범위로 한정한다.
 5. 표본의 각 탁송화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 표본 수입국의 관리당국은 표본의 수입을 위하여 제출된 수출 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허가서를 실효시킨 후 보관한다.
 7.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관리당국은 표본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표본에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표지”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모방할 수 없도록 고안된 지워지지 아니하는 압인·납인 또는 표본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말한다.

제 7 조

거래 관련 면제 및 그 밖의 특별 규정

1. 표본이 세관의 관할을 받으면서 당사국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영토 안에서 경유 또는 환적될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대하여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러한 표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개인 소지품이거나 가재도구인 표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관리당국에서 이 협약의 규정이 표본에 적용되기 전에 표본이 획득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 밖에서 획득 되어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 나. 부속서 II 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경우에
 - (1) 소유자가 상주국 밖의 국가에서 야생상태로부터 분리된 표본을 획득한 경우
 - (2) 표본이 소유자의 상주국으로 수입된 경우
 - (3) 야생상태에서 표본이 분리된 국가에서 표본 수출에 악서 수출



허가서의 사전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4. 부속서 I에 포함된 동물 종의 표본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되어 번식된 표본 또는 부속서 I에 포함된 식물 종의 표본으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번식된 표본은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5. 수출국의 관리당국에서 동물 종의 표본이 사육·번식되었다고 또는 식물 종의 표본이 인공번식되었다고 또는 이러한 동·식물의 부분 또는 파생물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관리당국이 이와 같은 취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서나 증명서에 갈음하여 수락된다.
6.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식엽표본, 보존·건조 또는 포매된 그 밖의 박물관용 표본 및 관리당국이 발급·승인한 표지를 부착한 살아 있는 식물이 관리당국에 등록된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관리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면제하고 허가서나 증명서 없이 이동동물원·곡예단·유랑동물원·식물전시회 또는 그 밖의 이동전시회를 구성하는 표본의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수출·입자가 표본의 상세를 관리당국에 등록하는 경우
 - 나. 표본이 제2항 또는 제5항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경우
 - 다. 관리당국에서 살아있는 표본이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송되고 보호될 것임을 인정한 경우

제 8 조 당사국의 조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표본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가. 표본의 거래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 또는 양자 모두에 대한 처벌
 - 나. 표본의 몰수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규정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 규정의 적용조치를 위반하고 거래된 표본의 몰수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국내적 변상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표본의 거래에 필요한 절차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신속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본이 통관되는 출·입국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국은 살아있는 표본이 통과·

- 보관 또는 선적 기간 중에 상해·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확대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보호될 것임을 보장한다.
4. 살아있는 표본이 제1항에 규정된 조치에 따라 몰수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 표본은 몰수국의 관리당국에 인도된다.
 - 나. 관리당국은 수출국과 협의한 후 표본을 수출국의 부담으로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보호센터 또는 관리당국이 이 협약의 목적과 부합하며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장소로 반송한다.
 - 다. 관리당국은 보호센터 또는 그 밖의 장소 선택을 포함하여 나호에 따른 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당국의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무국과 협의할 수 있다.
 5. 제4항에 규정된 보호센터는 살아있는 표본 특히 몰수된 표본의 건강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당사국은 부속서 I, II 및 I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무역과 관련,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 가. 수출·입자의 성명 및 주소
 - 나. 발급된 허가서와 증명서의 숫자 및 종류, 거래상대국, 표본의 숫자 또는 양과 종류, 부속서 I, II 및 III에 포함된 종의 명칭, 가능한 경우 해당 표본의 크기 및 성별
 7.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기보고서를 준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 가. 제6항 나호에 명시된 자료의 개요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 나.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규제·행정조치에 관한 격년보고서
 8. 제7항에 규정된 자료는 관련 당사국의 국내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공개된다.

제 9 조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당국을 지정한다.
 - 가. 당사국을 대표하여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리당국
 - 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학당국

2.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는 동시에 다른 당사국 및 사무국과 연락할 권한이 부여된 관리당국의 명칭과 주소를 수탁 정부에 통지한다.
3.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권한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모든 다른 당사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통보한다.
4. 제2항에 규정된 관리당국은 사무국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관리 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장·관인 또는 그 밖의 도구를 통보한다.

제 10 조

협약 비당사국과의 거래

이 협약의 비당사국과 수출·재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이 협약상 허가서 및 증명서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일치되도록 발급한 문서는 당사국이 허가서 및 증명서에 같음하여 수락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국 총회

1. 사무국은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당사국 총회를 소집한다.
2. 사무국은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 최소한 2년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당사국은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사무국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작성
 - 나. 제15조에 따른 부속서 I 및 II에 대한 개정안의 심의·채택
 - 다. 부속서 I, II 및 III에 포함된 종의 회복·보전에 관한 진전사항 검토
 - 라. 사무국 또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접수·심의
 - 마.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고
4. 당사국은 정기회의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다음 정기 회의의 시기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5. 당사국은 어느 회의든 회의의 의사규칙을 결정하고 채택할 수 있다.
6. 국제연합·국제연합 전문기구·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비당사국은

옵서버로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7. 야생 동식물의 보호·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총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을 사무국에 통지한 기관 또는 단체는 출석한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옵서버로 참석이 허용된다.

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관·단체 및 국내 정부기관·단체

나. 국내 비정부 기관·단체로서 그 소재국이 회의참석을 승인한 기관·단체

이러한 옵서버의 참석이 허용되는 경우, 옵서버는 투표권이 없이 참석한다.

제 12 조

사무국

1. 이 협약이 발효하는 경우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제공한다. 사무총장은 야생 동식물의 보호·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진 적절한 정부간·비정부간의 국제·국내기관 및 단체로부터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회의의 준비·지원

나. 이 협약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기능의 수행

다. 살아있는 표본의 적절한 준비·선적기준과 표본의 식별 방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에 기여하는 과학적·기술적 연구의 수행

라.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 및 이 협약의 이행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서와 관련된 추가 자료의 당사국에 대한 요청

마.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 환기

바. 부속서 I, II 및 III의 최신 개정판과 부속서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자료의 정기적 발간 및 당사국에 대한 배포

사. 사무국의 활동 및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와 당사국 회의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의 준비

아.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자료 교환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자. 당사국이 위임하는 그 밖의 기능 수행



제 13 조 국제적 조치

1. 사무국은 접수된 자료에 비추어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포함된 종이 종의 표본의 거래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이 협약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 관리당국에 통보한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경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관련사실을 사무국에 통지하며, 적절한 경우 시정조치를 제안한다. 당사국이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자료는 다음 당사국 총회에서 검토되며 당사국 총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있다.

제 14 조 국내입법 및 국제협약에 대한 영향

1.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국내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부속서 I, II 및 III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 · 포획 채취 · 소지 또는 운송 조건에 관한 더욱 엄격한 국내조치, 또는 이의 완전한 금지
 - 나.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의 거래 · 포획채취 · 소지 또는 운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내조치
2. 이 협약의 규정은 표본의 거래 · 포획채취 · 소지 또는 운송 등 그 밖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 중이거나 또는 추후 발효하게 될 조약 · 협약 또는 국제협정에 기초한 국내조치의 규정 또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치에는 세관 · 공중보건 · 수의학 · 식물검역분야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공동대외관세규제를 설립 · 유지하고 관세규제를 철폐하는 관세 동맹 또는 역내무역협정의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조약 · 협약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관세동맹 또는 무역 협정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부속서Ⅱ에 포함된 해양 종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발효 시점에 발효중인 조약·협약 또는 국제 협정의 당사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나라에 등록된 선박이 이러한 조약·협약 또는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포획채취한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의 표본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5.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포획 채취된 표본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이 표본이 관련 조약·협약 또는 국제 협정의 규정에 따라 포획채취되었다는 취지로 반입국의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6.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연합총회 결의 2750(XXV)에 따라 소집된 국제연합해양법회의의 해양법 법전화 및 발전을 해하지 아니하며, 해양법과 연안국 및 기국 관할권의 성격에 관한 어떤 국가의 현재 또는 장래의 주장 및 법적 견해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부속서 I 및 II의 개정

1. 당사국 총회 회의에서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대하여 개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당사국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될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최소한 회의 개최 150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된다. 사무국은 제2항 나호 및 다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안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고, 늦어도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이에 관한 회신을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 나. 개정안은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당사국을 말한다. 투표에서 기권한 당사국은 개정안의 채택에 필요한 3분의 2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회의 후 90일부터 제3항에 따라 유보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2. 당사국 총회의 회기와 회기 사이에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대한 개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당사국은 당사국 총회의 회기와 회기사이에 검토를 위하여 이 항에 규정된 우편절차에 따라 부속서 I 또는 II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나. 사무국은 해양 종에 관한 개정안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사무국은 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간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 이러한 단체가 실시하는 보존조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단체와 협의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단체가 표명한 견해, 제공한 자료, 사무국 자체의 조사 결과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 다. 사무국은 해양 종 이외의 종에 관한 개정안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당사국에 통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 자체의 권고를 통보한다.
 - 라. 사무국이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사무국 자체의 권고를 당사국에 통보한 후 60일 안에, 당사국은 관련 과학 자료·정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다.
 - 마. 사무국은 접수된 회신을 사무국 자체의 권고와 함께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 바. 마호의 규정에 따라 회신 및 권고가 통보된 후 사무국이 30일 안에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은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90일 후에 발효한다.
 - 사. 사무국이 당사국으로부터 이의를 접수하는 경우, 개정안은 아호·자호 및 차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에 회부된다.
 - 야. 사무국은 이의통고가 접수되었음을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 자. 사무국이 아호에 따른 통고 후 60일 안에 최소한 당사국 과반수로부터 찬성·반대 또는 기권투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안은 추후 검토를 위하여 총회의 다음 회의에 회부된다.
 - 차. 당사국 과반수로부터 투표가 접수된 경우, 개정안은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한 당사국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된다.
 - 카. 사무국은 투표결과를 모든 당사국에 통고한다.
 - 타. 개정안이 채택된 경우, 개정안은 사무국이 개정안이 수락되었음을 통보한 날부터 90일 후에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당사국은 제1항 다호 또는 제2항 타호에 규정된 90일 기간동안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유보를 한 당사국은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종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

으로 취급된다.

제 16 조 부속서Ⅲ 및 그 개정

1. 당사국은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자기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확인한 종의 목록을 언제든지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부속서Ⅲ은 이에 포함될 종을 제출한 당사국의 명칭, 제출된 종의 학명 및 제1조 나호의 목적상 종과 관련하여 명시된 관련 동·식물의 부분 또는 파생물을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 목록을 가능한 한 신속히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목록은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부속서Ⅲ의 일부로서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 목록이 통보된 후 언제든지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종·종의 부분 또는 파생물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종·종의 부분 또는 파생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3. 부속서Ⅲ에 포함시킬 종의 목록을 제출한 당사국은 사무국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종의 포함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철회는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록을 제출한 당사국은 종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모든 국내법규의 사본을,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국이 요청한 해석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러한 당사국은 표본이 부속서Ⅲ에 포함되어 있는 동안 관련 국내법규의 개정사항 또는 개정 법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출한다.

제 17 조 협약의 개정

1.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채택하기 위한 당사국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개정안은 출석·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석·투표한 당사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국을 말한다. 투표에서 기권한 당사국은 개정안의 채택을 위하여 필요한 3분의 2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무국은 개정안을 최소한 회의개최 90일 전까지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 
3.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수락서를 수탁정부에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 그 밖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은 당사국이 개정수락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당사국 사이의 교섭에 따른다.
2. 분쟁이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특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당사국은 중재재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 서 명

이 협약은 1973년 4월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 1974년 12월 31일까지 베른에서 개방된다.

제 20 조 비준·수락·승인

이 협약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정부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제 21 조 가 입

이 협약은 가입을 위하여 무기한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정부에 기탁된다.

제 22 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열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정부에 기탁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열번째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제 23 조 유 보

1. 이 협약의 규정은 일반적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별적 유보는 이 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수 있다.
2. 국가는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다음에 대하여 개별적 유보를 행할 수 있다.
 - 가. 부속서 I, II 또는 III에 포함된 중
 - 나. 부속서 III에 포함된 중과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 규정된 부분 또는 파생물
3.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유보를 철회할 때까지 당사국은 유보에 규정된 특정 중·부분 또는 파생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비당사국으로 취급된다.

제 24 조 폐 기

당사국은 언제든지 수탁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수탁정부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 25 조 수 탁 자

1. 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의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수탁정부에 기탁되며, 수탁정부는 인증등본을 협약에 서명한 국가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송부한다.
2. 수탁정부는 서명국, 가입국 및 사무국에 서명,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 협약의 발효, 협약의 개정, 유보의 시행·철회 및 폐기통고를 통지한다.
3. 수탁정부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대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들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삼년 삼월 삼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었다.

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원문(영문)은 CITES 홈페이지(www.cites.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발 행 일 2010년 6월
발 행 인 김 승 희
편집위원장 김 동 섭
편집 위원 성락선, 박주영, 심영훈, 조창희, 김지연,
이종화, 현성예, 김선호, 이윤정, 이춘길,
권기태, 손성구, 신진선
사진 촬영 성락선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홈 페이지 www.kfda.go.kr www.cites.org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122-704)
<http://www.kfd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TEL : 02) 380-1863 FAX : 02) 388-6524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TEL : 02) 380-1892~3 FAX : 02) 385-0297